

배포 2023. 10. 6.(금)

보도시점

(인터넷)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김건섭	(044-203-6644)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6173)

-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일부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운영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기준·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에 따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u>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u>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교부금의 보고)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p> <p>1. <u>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u></p> <p>2. <u>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u></p>